

# 관광진흥법 위반 업체(호텔업) 2차 행정처분 (사업계획승인 취소) 공시송달 공고

「관광진흥법」 시행령 제32조 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체(호텔업)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35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따라 행정처분 통지서를 우편(등기)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\*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「행정절차법」 제15조제3항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.

1. 처분의 제목 :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 위반(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)에 따른 2차 행정처분(사업계획승인 취소)

2. 당사자

업종	상호	대표자	소재지	위반내용
관광숙박업	호텔스테이인	임*혁	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679-7	관광진흥법 제32조 (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)

3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

-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 위반

4. 처분내용 : 2차 행정처분(사업계획승인 취소)

- [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2] 행정처분의 기준

위반사항	근거법령	행정처분기준			
		1차	2차	3차	4차
하.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에 따른 기간 내에 착공 또는 준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5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	법 제35조 제1항 제8호	시정명령	사업계획 승인취소	-	-

5. 처분일 : 2025. 08. 14.(목)

6. 공고기간

가. 공고기간 : 2025. 9. 12. (금) ~ 2025. 9. 25.(목) (14일간)

나. 문 의 : 파주시청 관광과

- 주 소 :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47, 파주시청 관광과(3층)

- 연락처 : 031-940-4362, 팩스 : 031-940-4369

7. 게시장소 : 파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, 타 지방자치단체 게시판

#### 8. 기타사항

가.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이나 상급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, 또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나. 기타 문의사항은 파주시 관광과(☎ 031-940-4362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2025. 9. 12.

파 주 시



PAJU